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 및 영업 범위 현행화 정비(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7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위생관리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복지동 2층 위생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33 / Fax 031)940-44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